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사)대한민국독도협회
KOREA DOKDO ASSOCIATION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846년 판)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일본,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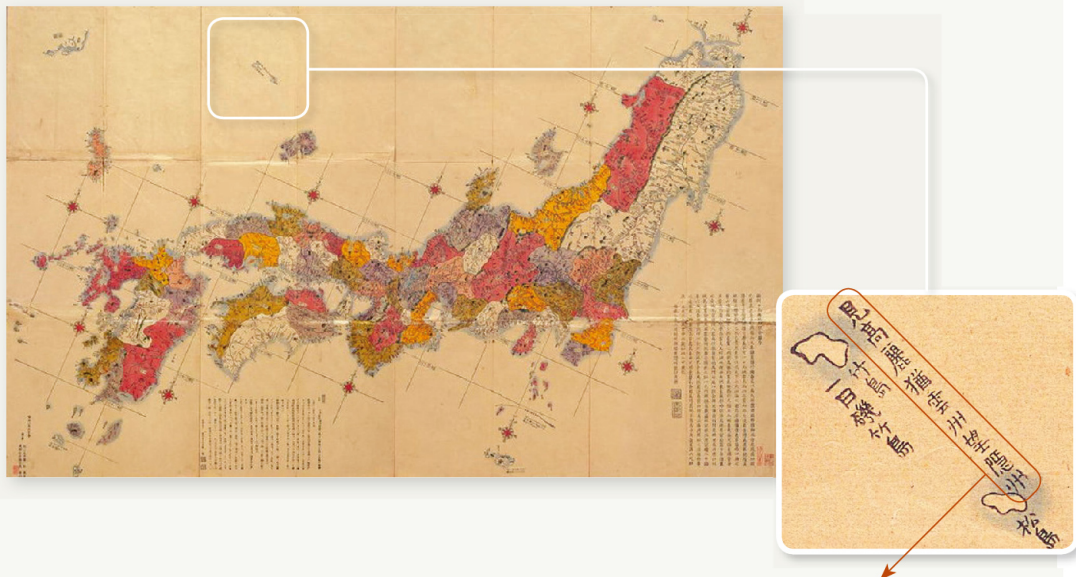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1846년 판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정식 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 섬이라고 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의 문구도 기록돼 있다(자료1). 이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朝鮮全圖)』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자료2).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島根県]의 지적(地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질의한 내무성에 대해 17세기말 에도[江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죽도(竹島: 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지령에 나오는 ‘일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마네 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를 보면 이 ‘일도’가 송도(松島, 즉 독도)라는 사실은 명백하다(자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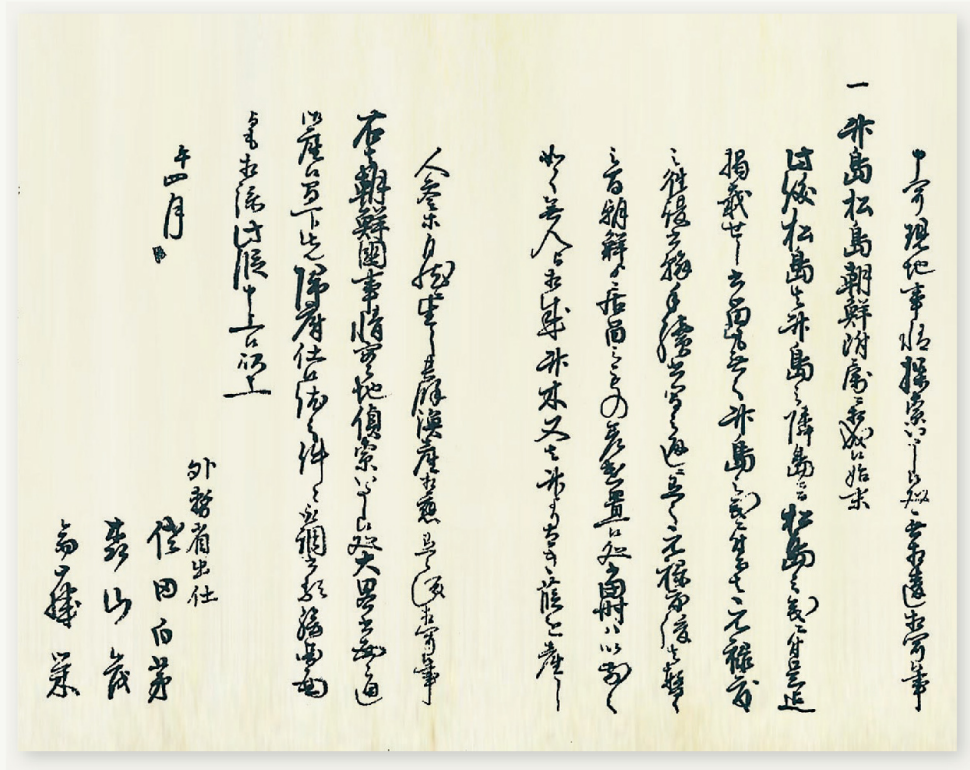
자료 1 |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1779년 초판)



(울릉도에서) 고려(조선)를 바라보는 것은 운슈(雲州: 현재의 시마네 현)에서
인슈(隱州: 현재의 오키 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자료 2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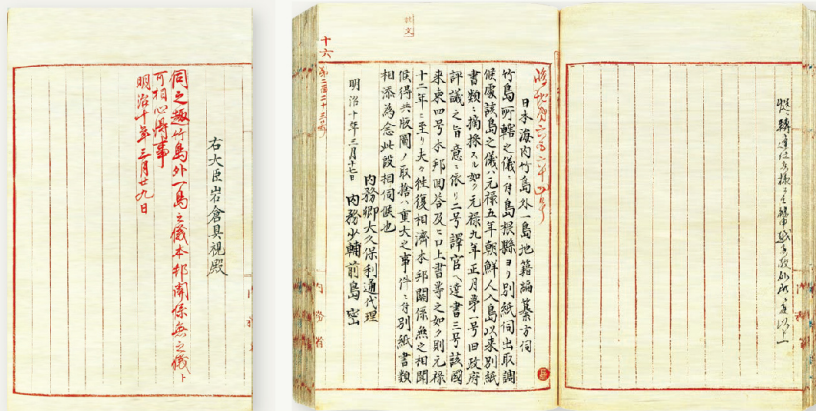
죽도(竹島:울릉도) · 송도(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바가 없으나, 죽도에 관한 기록은 원록 연간(元祿年間)에 주고받은 서한에 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사람을 파견해 거류하게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됐다. 대나무와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그 외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에서 정찰한 내용으로 그 대략적인 것은 서면에 기록한 대로다. 일단 귀국해서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해 보고하겠다. 이상

午(1870년) 4월 외무성 출사(外務省出仕)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카에

자료 31 일본 태정관 지령과 부속 지도「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18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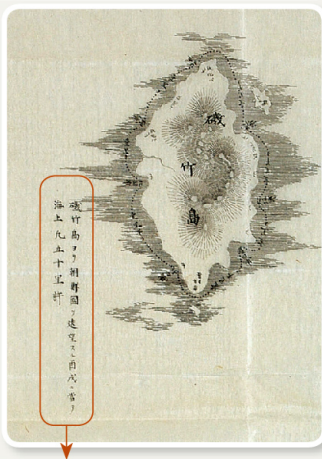
▼ 태정관 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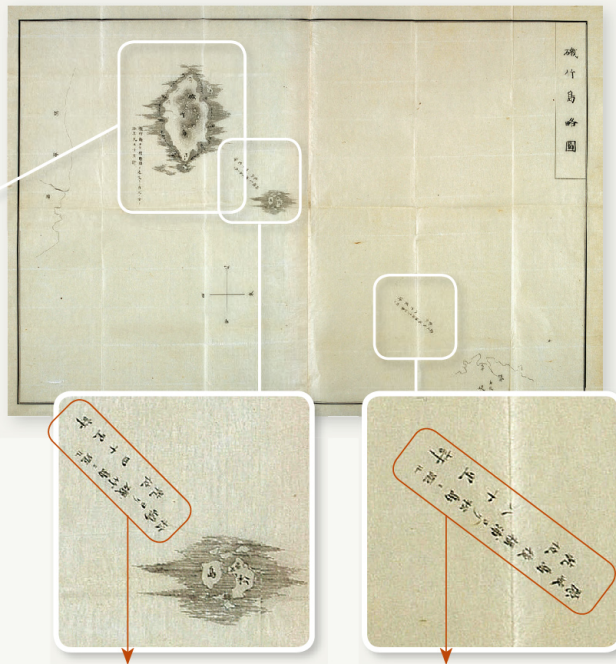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메이지 10년(1877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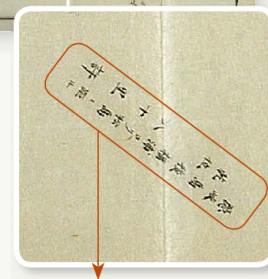
기죽도약도 ▶



기죽도(磯竹島: 울릉도)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서북에 해당되며
해상으로 약 50리 정도



송도(松島: 독도)에서
기죽도(울릉도)까지 서북쪽
40리 정도



오키 도고 후쿠우라에서
송도(독도)까지 서북쪽
80리 정도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다.

2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한국의 명백한 독도 인식,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

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자료4).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돼 왔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고 기록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과 우산도가 우산국의 소속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한국의 많은 관찬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의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는 기술을 보면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은 명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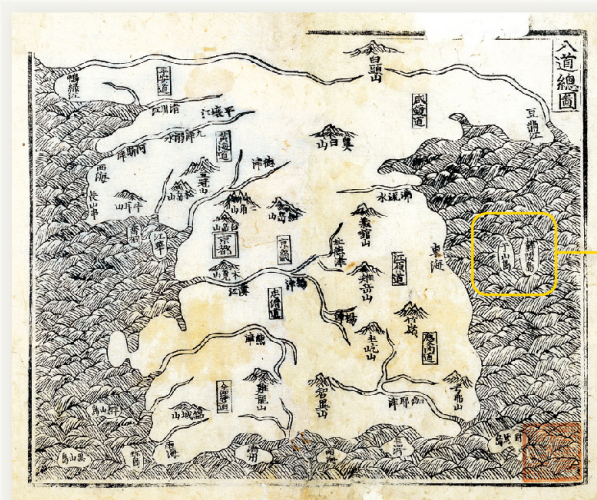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자료5).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두 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국지도(東國地圖)」 등 18세기 이후의 지도는 모두 우산도를 울릉도 동쪽에 그리는 등 독도의 위치와 형태도 점차 정확해진다.

자료 4 |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자료 5 | 팔도총도(八道總圖)



관찬사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다. 동해상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戸]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 번[鳥取藩]의 요나고[米子] 주민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가지어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됐다. 이렇듯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막부와 돗토리번,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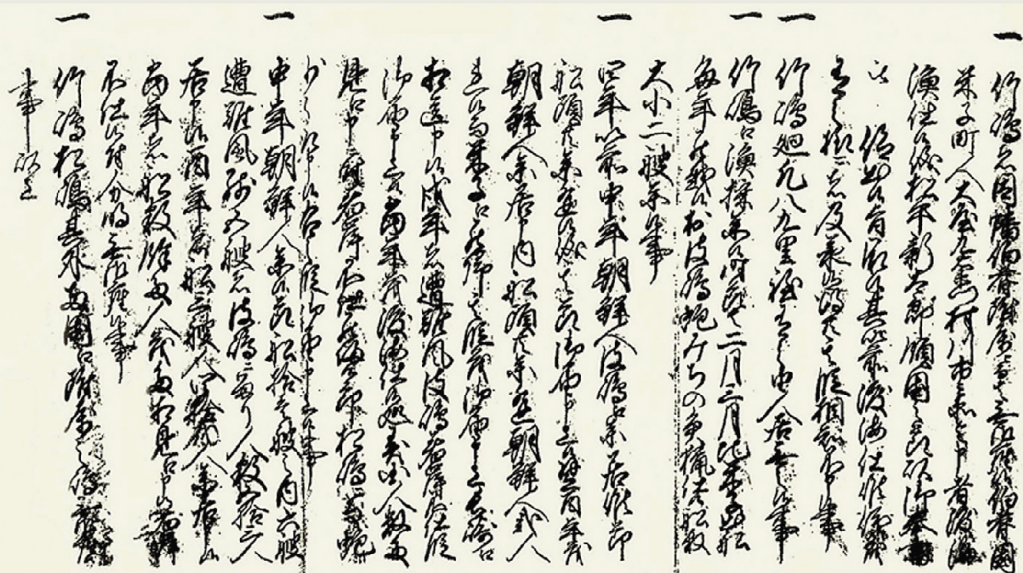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죽도(竹島: 울릉도) 외에 돗토리 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죽도(竹島: 울릉도), 송도(松島: 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자료6).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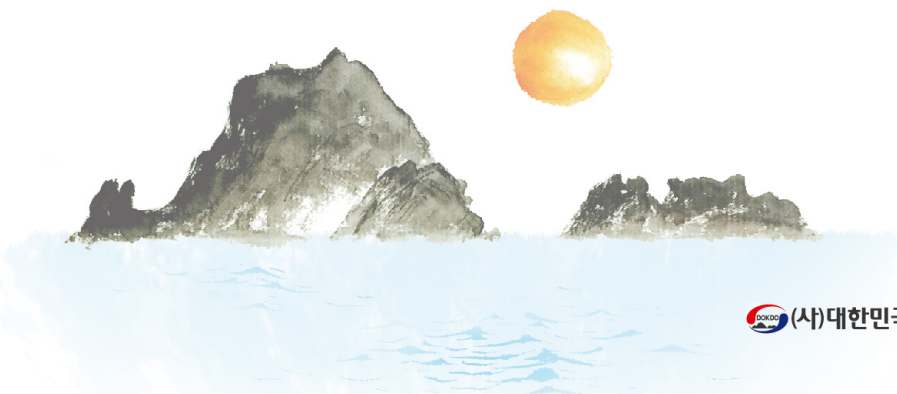
자료6 |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년)



죽도(竹島: 울릉도)는 이나바·호키(돗토리 번) 소속이 아닙니다. 호키국 요나고의 상인 오야 구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라는 자가 도해해 어업하는 것을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봉서를 통해 허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도해한 적이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그 일은 잘 모릅니다.

(중략)

죽도(竹島·울릉도)·송도(松島·독도) 그 외 양국(이나바·호키)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이상.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해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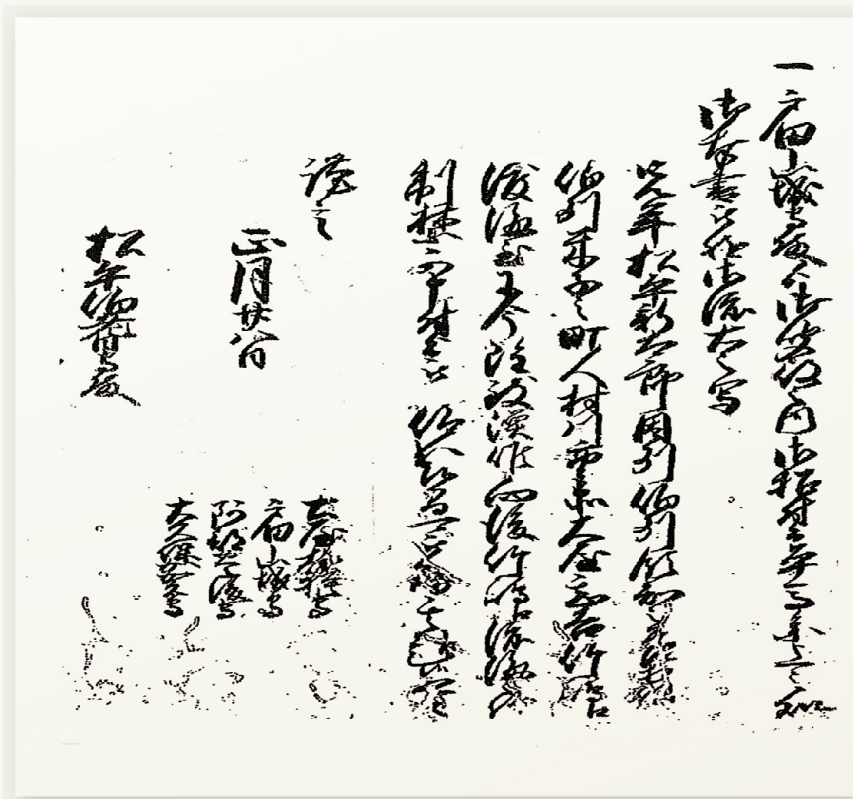
**독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별도의 도해 금지 조치는 불필요**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大谷] 가문의 문서를 보면,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竹島近邊松嶋)”(1659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竹嶋內松嶋)”(1660년) 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옛 일본인들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지, 독도만을 목적으로 도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면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자료7)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 71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竹嶋渡海禁止令)(1696년)



(전략) 이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인슈와 하쿠슈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쿠슈 요나고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와 오야 진키치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해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

정월 28일

(발신): 쓰치야 사가미노카미, 도다 야마시로노카미, 아베 분고노카미, 오쿠보 가가노카미

(수신):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安龍福)의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5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안용복 진술, 한국과 일본 문헌이 입증

안용복의 도일(渡日)활동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에도(江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안용복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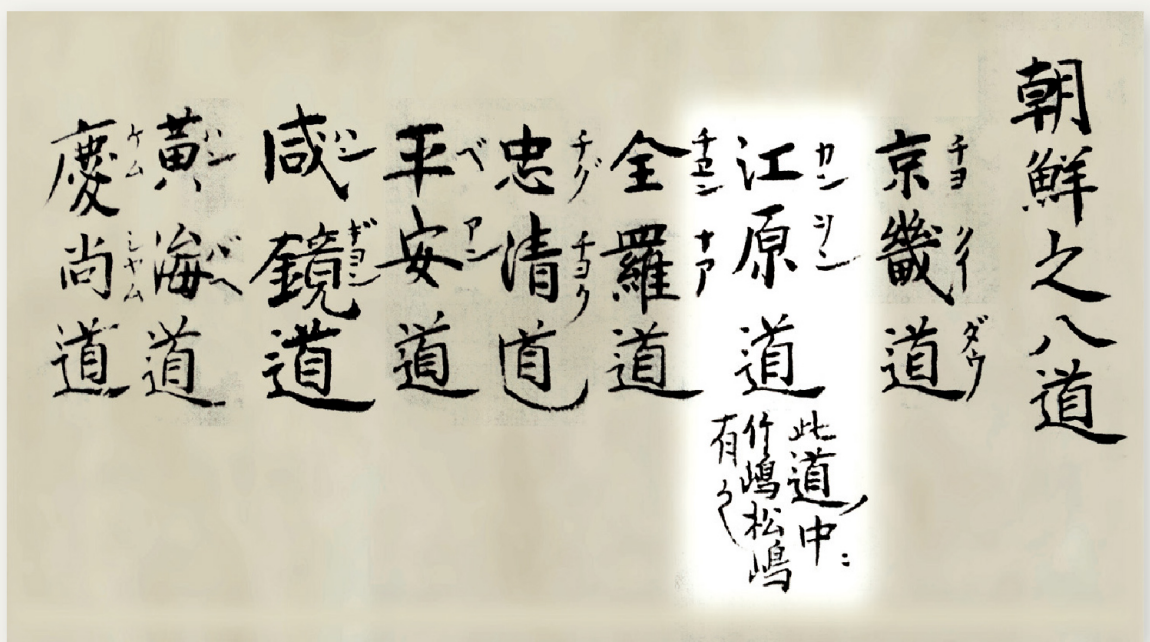
※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사료와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도 기록돼 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활동에 대해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의 침범에 항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오키 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渡日)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는 안용복이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이라고 주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숙종실록』에 나오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자료8).

일본은 1696년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한 안용복의 진술에 대해서도 도해 금지령이 1월에 내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월에 내려진 막부의 도해 금지령은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에게 즉각 전달되지는 않았다. 조선에도 같은 해 10월에야 전달됐다. 따라서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 1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일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 81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중 구술조서 일부(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渡日) 시 활동 상황을 기록한 일본 문서로, 안용복이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1905년 시마네 현[島根県]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시마네 현 오키 섬[隱岐島]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같은 해 2월 시마네 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이 됐음을 고시했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일본, 러일전쟁 중 불법으로 독도 침탈

1905년 1월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이라는 주장은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배치된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항과 제물포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됐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제주도, 거문도, 울산 등에 망루를 건설했는데, 울릉도에도 1904년 8월 두 개의 망루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됐다.

나카이 요자부로도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조선 정부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나카이 요자부로도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의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내무성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하여 청원서를 각하하려 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을 감시하는 데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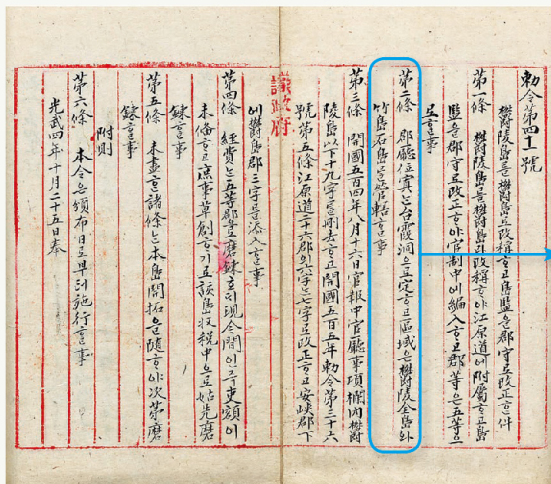
하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 편입을 추진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무효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왔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자료9)를 통해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일본은 영토 편입 시 미국 등 서구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통고나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입을 강행했다. 울도(울릉도) 군수는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 현 관리들로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는 말을 들었다. 울도(울릉도) 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자료10). 대한제국 정부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자료11)와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 등의 언론은 일본의 독도 편입에 항의하는 글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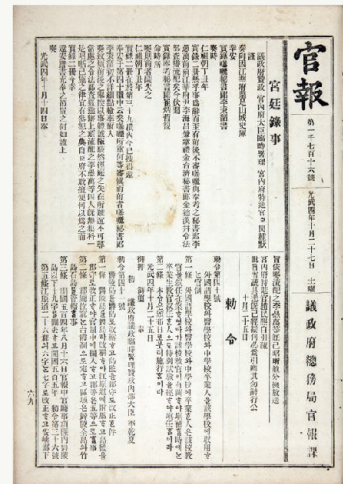
자료 9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게재된 관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했다. 그리고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1716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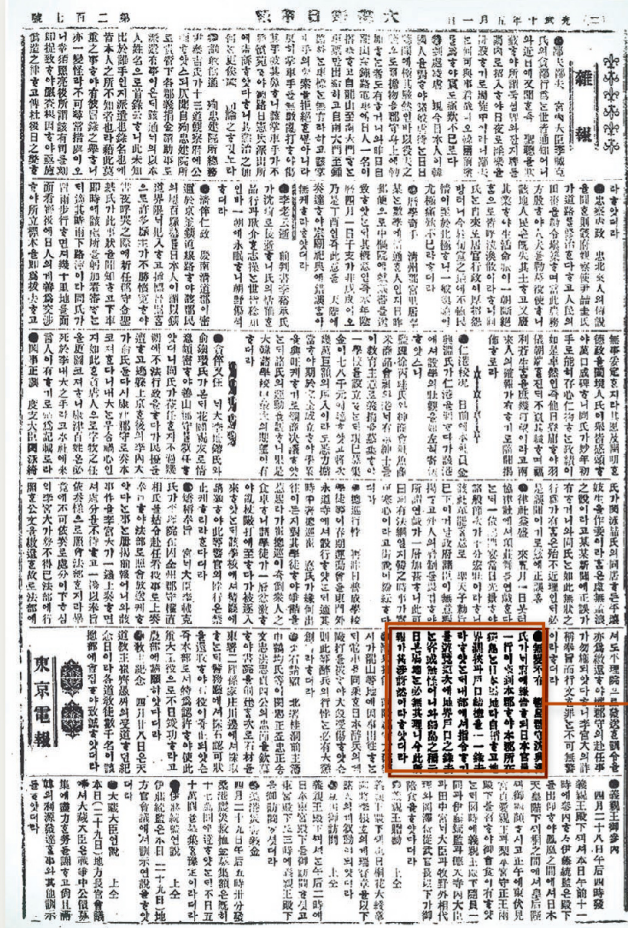
자료 101 강원도 관찰사 서리 겸 춘천 군수 이명래 보고서 호외(1906년 4월 29일) 및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제3호(1906년 5월 20일)



1906년 강원도 관찰사 서리 겸 춘천 군수 이명래는 “본국 소속 독도”를 일본이 편입했다는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고, 이를 즉시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제순은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니, 독도의 정황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료 11 | 대한매일신보



●無變不有 鬱島郡守沈典
氏가 니 府에 報告을 하되 日本官
一行이 本郡을 本郡所
界湖林과 戶口結總을 一一錄
라 實은 內部에서 指令을
을 派發한 地界戶口之錄
은 寄或無性이나 鬱島之稱
日本地也必無其理나 今此
報가 其涉訝然이라 實은 矣

무변불유(無變不有)

울도군수 심흥택 씨가 내부에 보고하되, “일본 관원 일행이 본군에 와서, 본군 소재 독도를 일본의 속지(屬地)라 자칭하고 지계(地界)의 활협(闊狹)과 호구의 결총(結總)을 일일이 기록해 갔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 독도와 칭하고 일본 속지라고 한 것은 결코 그럴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번 보고는 매우 놀랍다.”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리스크 서한'을 보내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 1. 29)를 적용했다(자료12).

※ 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

3. 이 각서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로 구성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 ·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독도) ... 등이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곳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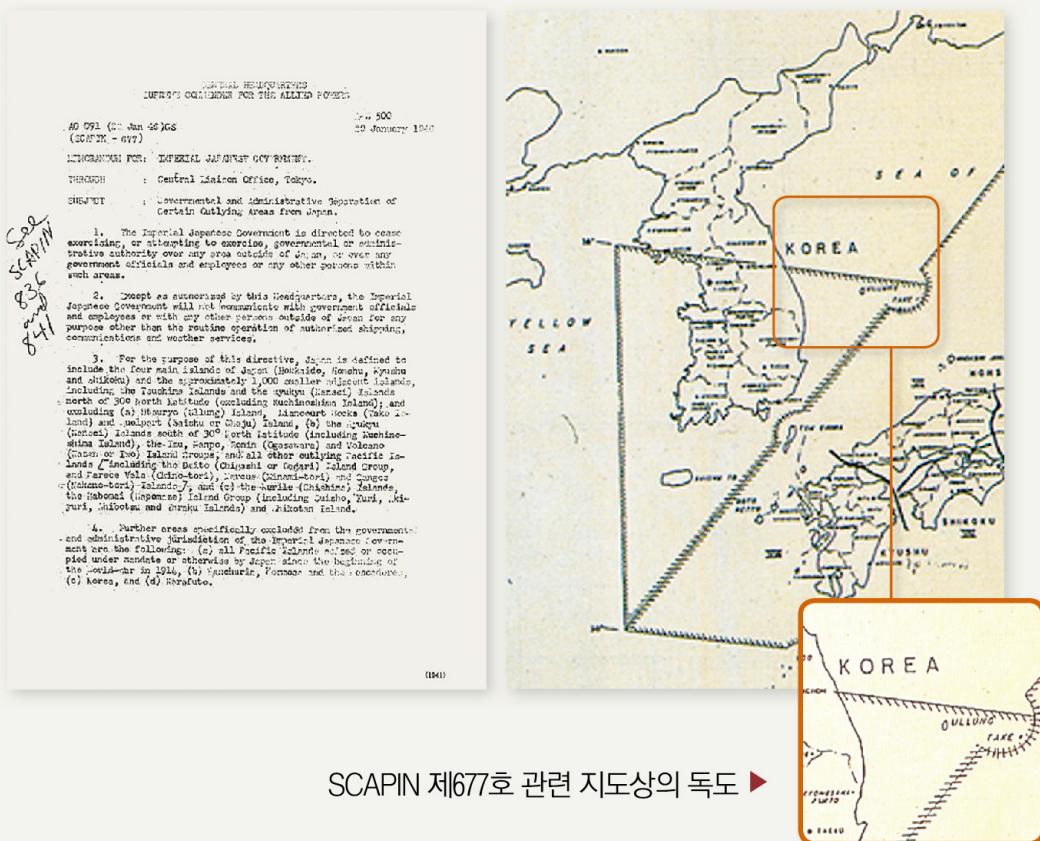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했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 되지는 않았다. 한국의 모든 섬들을 조약에서 거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닌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영유권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1945년 8월 연합국의 승리, 1948년 8월 15일 UN 결의에 근거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회복됐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자료 12 | SCAPIN 제677호(1946년 1월 29일)와 관련 지도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1952년 7월 미일행정협정 합동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독도를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미 공군, 한국 정부 항의로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시 제외**

독도는 한국 어민들의 중요한 어로활동 구역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자료13)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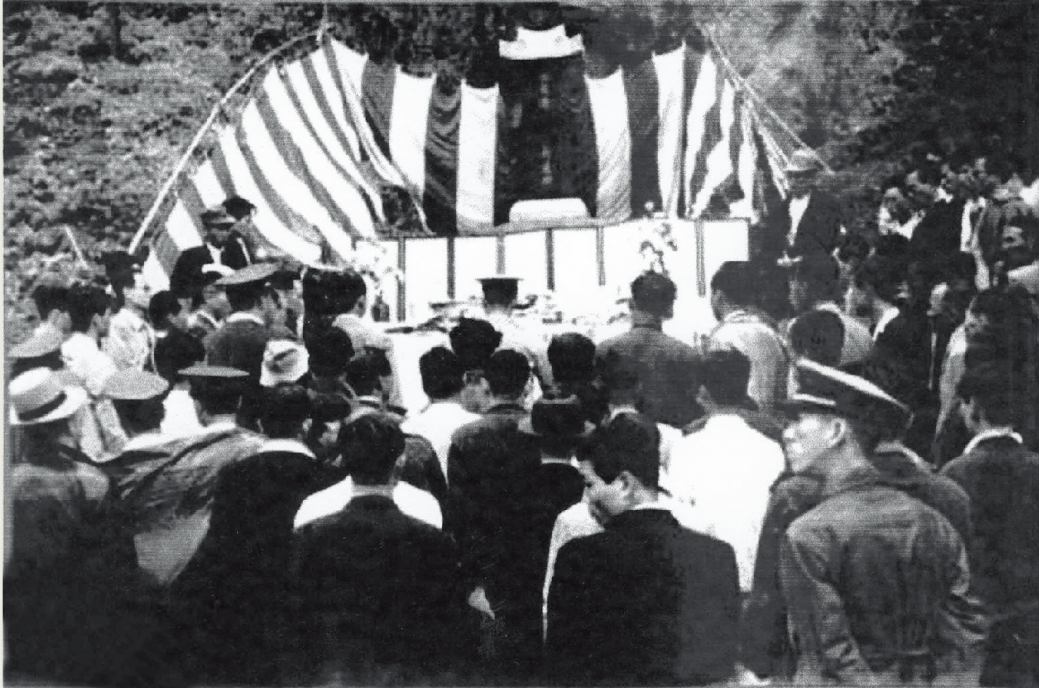
※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 현[島根県]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 질의에 이시하라 간이치로[石原幹市郎] 외무차관이 응답한 내용

야마모토 의원 : “이번에 주둔군의 일본 내 훈련구역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훈련구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방면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2년 11월 한국 정부가 미 공군의 독도 폭격훈련에 대해 항의하자, 미 공군은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제외했다. 미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했다.

자료 131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제막식(1950년 6월 8일)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많은 우리 어민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극동항공대 사령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 일체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950년 6월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희생된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독도, 대한민국이 정당한 영토주권 행사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島根県] 고시로 독도를 침탈했다.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불법적으로 한국을 통치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되찾았다. 한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 연합국과 일본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독도를 수호함과 동시에 등대와 방사능 감지기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자료14).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한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1999년에는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법적인 정당성을 토대로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료 141 독도 주민숙소와 등대, 방사능 감지기



▲
독도 주민숙소



▲
독도에 설치된 등대와 방사능 감지기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일본의 주장 :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 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으며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0

일본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자료15). 따라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54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금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한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상호 우호증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자료 151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 독도(독도의 등대와 태극기)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사)대한민국독도협회
KOREA DOKDO ASSOCIATION

10126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33 라펠리체 704호

| TEL | 02-3452-2626 | E-mail | dokdo1961@naver.com | Home page | www.ddsr.or.kr

• 자료제공 :  **동북아역사재단**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